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에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설치하는 등 해양경찰정비창을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1명(3·4급 1명, 5명 2명, 6급 19명, 7급 31명, 8급 27명, 9급 27명, 경정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4명, 순경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35520호, 2025. 5. 20.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안전 인증제 사무를 추가하고, 해양에서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사국 소속 형사과와 중대범죄수사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교육·훈련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교무·교수 기능을 통합하고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및 분장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미래전략추진팀과 감찰팀을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연구사 2)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5. 05. 22. ~ 0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6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원”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상레저기구 안전 인증제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3호 중 “수사·지도”를 “수사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9.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수사국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 관련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수사

제11조 중 “운영지원과·교무과·교수과·직무교육훈련센터 및 학생과

를 두며, 운영지원과장·교무과장·교수과장”을 “운영지원과·교무과·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교무과장·학생과장”으로, “학생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의 실시
8.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10.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11.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
2. 교육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중전의 제1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습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해양경찰부산정비창) ① 해양경찰정비창 소속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둔다.

- ②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22”를 “220”으로, 일반직 계 “45”를 “43”으로, 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공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안전연구사 또는 통계연구사 “20”을 “1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2,247”을 “12,237”로, 경찰공무원 계 “11,094”를 “11,092”로, 경위 “1,047”을 “1,046”으로, 경사 “1,974”를 “1,973”으로, 일반직 계 “1,153”을 “1,14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9”를 “227”로,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6”을 “192”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1”을 “8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238”을 “12,228”로, 경찰공무원 계 “11,076”을 “11,074”로, 경위 “1,034”를 “1,033”으로, 경사 “1,974”를 “1,973”으로, 일반직 계 “1,162”를 “1,15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환

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9”를 “227”로,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5”를 “191”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1”을 “79”로 한다.

별표 8 중 총 계 “242”를 “373”으로, 경찰공무원 계 “40”을 “56”으로, 일반직 계 “202”를 “317”로 하고, 임기제 공무원(창장) 1 다음에 “총경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1”를 신설, 5급 이하 “201”을 “315”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5년 5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5년 6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①</u> <u>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미래전략추진팀장 1명을 둔다.</u> <u>② 미래전략추진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u> <u>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u> <u>1. 중장기 미래전략의 수립·총괄 및 조정</u> <u>2. 해양경찰 분야의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시행 및 총괄</u> <u>3.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한 정책과제에 관한 검토</u>	<u><삭 제></u>
<u>제4조의2(감찰팀장) ① 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찰팀장 1명을 둔다.</u> <u>② 감찰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u>	<u><삭 제></u>

다.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공직기강 확립, 비위예방 등 감찰 업무

3. 감찰 분야 징계위원회의 운영

4. 징계에 따른 소청 및 행정소송 대응

5. 감찰 분야 진정·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처리

6.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

8.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

제7조(구조안전국) ①·② (생략)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제7조(구조안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

인원 및 장비의 지휘·통제
및 조정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
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
· 감독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9. ~ 11. (생략)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제8조(수사국) ① ~ ③ (생략)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2. (생략)

3.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지도

4. 삭제

5. (생략)

6.·7. 삭제

<신설>

-- 조정에 관한 사항

7. -----
-----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8. -----

지원에 관한 사항

9. ~ 11.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수상레저기구 안전 인증제
에 관한 사항

제8조(수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 수사지휘·감독

5. (현행과 같음)

8.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지휘·
감독

<신 설>

⑤ (생 략)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3.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4. 부정부패·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교무과·교수과·직무교육훈련센터 및 학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교무과장·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수사국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 관련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수사

<삭 제>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

----- 운영지원과·교무과·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교무과장·학생과장 ----- 교육협력과장-----.

제13조(교무과) -----
-----.

1. ~ 6. (생략)

7. 실습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

<신설>

<신설>

<신설>

제14조(교수과)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실시

2.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4.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5.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교육의 실시

8.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10.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11.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삭제>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

2. 교육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제14조(학생과) -----
-----.

1. · 2. (현행과 같음)

3. 실습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해양경찰부산정비창)

① 해양경찰정비창 소속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둔다.

②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의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
 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
 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
 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
 ·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환
 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
 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학예구사·공업연구사·해양수
 산연구사·시설연구사·기록연
 구사 또는 경감 1명으로 본다.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미래전략추진팀장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 202
 5년 12월 31일----- 20
 26년 1월 1일 -----

 -----.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및 감찰팀장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미래전략추진팀장이 청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감찰팀장이 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래전략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 담당관이, 감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형사과장이 분장한다.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형사과장이 분장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② (생략)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u>별표 5의2의 정원 2명(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공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안전연구사 또는 통계연구사 2명)</u>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22</u>		<u>220</u>	-2	
일반직	.	계	.		.		
	.		.		.		
	.		.		.		
	.		.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방재 안전주사보 · 공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 연구사 · 안전연구사 또는 통계연구사	.		.		.		
	.		.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247	12,237	-10
경찰공무원 계	11,094	11,092	-2
경위	1,047	1,046	-1
경사	1,974	1,973	-1
일반직 계	1,153	1,145	-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9	227	-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 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u>196</u> .	<u>192</u> .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 .	<u>91</u> . .	<u>89</u> . .	-2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2,238</u>	<u>12,228</u>	-10
경찰공무원 계	<u>11,076</u>	<u>11,074</u>	-2
경위	<u>1,034</u>	<u>1,033</u>	-1
경사	<u>1,974</u>	<u>1,973</u>	-1
일반직 계	<u>1,162</u>	<u>1,154</u>	-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229</u>	<u>227</u>	-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 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u>195</u> .	<u>191</u> .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 .	<u>81</u> . .	<u>79</u> . .	-2

[별표 8]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42</u>	<u>373</u>	+131
경찰공무원 계	<u>40</u>	<u>56</u>	+16
일반직 계	<u>202</u>	<u>317</u>	+115
임기제 공무원(창장)	1	1	0
<u>서 기 관 · 과 학 기 술 서 기 관</u>	<u>0</u>	<u>1</u>	+1
<u>또는 총경</u>			
5급 이하	<u>201</u>	<u>315</u>	+114